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08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허 영 · 박용갑 · 이기현
김기표 · 김동아 · 이성윤
최혁진 · 위성곤 · 문진석
이병진 · 박상혁 · 전진숙
문금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막대한 권한과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일부 직위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인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분야의 주요 인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1호), 「선거관리위

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및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참모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 ----- ----- ----- -----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u>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u>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u>합동참모의장</u> ,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1. ----- ----- ----- ----- ----- ----- <u>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u> , <u>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u> ----- ----- <u>합동참모의장</u> , <u>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